

(9) 대한건축학회 회칙 제8차 개정 (1977. 4. 23 정기총회)

1977년 4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.

[회비 비율]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비 비율을 2 :1로 명시하였던 종전 규정 부분을 폐지하고, 이사회에서 정한다.

[지부 운영자산] 지부의 통산자산 중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을 종전에는 1/4로 명시하였으나, 이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[찬조회원의 개칭] 종전의 찬조회원을 특별회원으로 개칭한다.

(10) 대한건축학회 회칙 제9차 개정 (1978. 4. 29 정기총회)

1978년 4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정관일부가 개정되었다. 이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1978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.

[회원 자격의 정지 및 상실]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치 못하면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을,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의 결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게 하였다.

[임원 선임 절차의 보완] 회장, 부회장, 참여이사 및 감사는 총회개최 1개월전에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 종전의 규정 중 그 선출 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. 또 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던 종전의 규정을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일괄 인준을 받도록 개정하였다.

(이상 대한건축학회 50년사 403, 404쪽에서 발췌)